프랑스 판결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유쪽에게 승계되며 사적인 장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 배포하였으므로 민 · 형사상 책임이 있다

M. Al Fayed c/ R. Théend
파리지방법원 17 부(Tribunal do grande instance do Paris)
1998 년 4 월 28 일 판결

1. 형사책임 관계

형법 제 226 조에 비추어 보건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당사자나 그의 권리를 승계한 자는 고소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1997 년 8 월 31 일 사망한 아들 에마드 파에드(Emad Fayed) 씨의 부친인 모하메드 알 파에드(Mohamed Al Fayed) 씨가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법 제 226 조 제 2 항에 의하면 사생활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는 사생활의 공표행위,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행위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취득한 개인의 초상을 공표하는 행위, 남을 속이려는 의도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파리-마치(Paris-Ma-tch)'지는 1997 년 8 월 21 일자 발행호 1 면 및 43~45 면에 걸쳐 다섯 장의 사진을 게재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사진들은 "다이아나의 키스"라는 제하에 에마드 파에드 씨와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서로 손을 맞잡고 배 위에서 껴안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에마드 파에드의 애정생활에 관련된 사생활의 평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사생활권은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서 인정 되고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헌병상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유명인의 사생활의 공표는, 비록 그것이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언론의 상업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독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행위나 표현의 자유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피고는 에마드파에드 씨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유렵인권협약 제 10 조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에마드 파에드 써와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배 위에 있었던 곳은 점유자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형법 제 226 조에서 지칭하는 사적인 장소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사진을 촬영할 시점에 배가 항구로부터 멀러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살펴 보건대, 에마드 파에드 씨는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의 배포에 관해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문제의 사진은 에마드 파에드 씨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 비추어 에마드 파에드 씨가 이들 사진촬영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들 사진이 주간지인 파리-마치 지에 게재된다는 사전광고를 보고서, 에마드 파에드 씨는 '파리 -마치'지의 발행인 에게 공중인의 최고장을 통해서 이들 사진의 게재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망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한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테롱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의 사진은 불법적이고 사전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 226 조 제 2 항의 위법행위 요건이 성립되고, '파리-마치'지의 발행인인 테롱 씨는 동조 제 2 항 소정의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문제의 사진이 이탈리아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형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문제의 사진은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파리-마치'지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법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건의 불법적 취득이라는 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프랑스 형법 제 226 조 제 1 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벌금 5 만 프랑을 선고한다.

2. 민사책임 관계

알 파에드 씨는 에마드 파에드 씨의 부친으로서 비록 그의 아들이 사망하였지만 그의 아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에마드 파에드 씨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다이아나 왕세자비 또한 사진작가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문제의 사진을 1 백만 프랑에 사들여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한 파리-마치 지의 의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알 파에드 씨는 40 만 프랑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이 손해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청구하였다. 알 파에드 씨는 또한 법원의 공보(communiquf)를 '파리 -마치'지 의 표지와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게재함과 동시에, 법원이 명하는 다른 여타 3 개 저널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측 답변에 의하면, 에마드 파에드 씨가 자신의 요트 위에서 취한 자세를 보컨대 그것은 다이아나 왕세자비와의 관계를 숨기려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사진은 '과리-마치'지에 공표되기 며칠 전에 영국의 잡지인 '미러(Mirror)'지에 이미 게재된 바 있고, 이들 사진은 에마드 파에드 씨의 사망 사건에 따라 다른 여타의 전세계 저널에서도 게재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진은 이미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사항이 되어 버렸으므로 특별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파리 -마치'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사진을 배포함으로써 에마드 파에드 씨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그의 부친인 알 파에드 씨가 이에 기초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명 인사인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취한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에마드 파에드 씨로서는 그녀와의 연민관제를 결코 비밀리에 유지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 다른 여타의 저널, 예컨대 영국의 '미러'지에 이들 사진이 보도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파리 -마치'지 가 문제의 사진을 배포한 최초의 언론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

문제의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충격적이거나 스캔들에 휘말릴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들이 바캉스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에마드 파드 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5 만 프랑이 상당하며, '파리-마치'지에만 법원의 판결을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른 여타의 청구는 이유없다.

3. 판결 주문

주간지 '파리-마치'지의 발행인인 로저 테롱씨는 형법 제 22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6 항 ·제 3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를 야기시킨 문건의 공표가 인정된다. 이에 5 만 프랑의 벌금을 명한다.

아메드 파에드 씨의 부친인 알 파에드 씨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테롱 써가 5 만 프랑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파리-마치'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일자의 다음 달에 다음과 같은 공보(communique)를 공시할 것을 명한다.

"파리지방법원 형사 제 17 부 1998 년 4 월 28 일 판결에 따라, 주간지 파리-마치 지의 발행인인 딘저 테롱 씨는, 사적인 장소에서 왕세자비인 다이아나와 에마드 카에드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1997 년 8 월 21 일 자에 보도하였으므로, 5 만 프랑의 벌금형과 더불어, 에마드 카에드 씨의 상속인민 모하메드 알 파에드 씨에 대하여서는 5 만 프랑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 받았다."

또한 이 공보(communiquf)는 '파리-마치'지의 '시사(actualit)'란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게재하며, 1cm 의 크기로 "'파리-마치'지에 대한 유죄판결" 이라는 제목하에 게재하여야 한다.

판결해설

사적인 장소에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사진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서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나아가서 템친의 판결공시론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결방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형사상 처벌까지도 가해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배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문제되었는데, 이 돈이 사망한 이후에 이 중 한 사람의 상속인이 청구한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와 제 10 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의 조화를 기하고 있으면서도, 정보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유명인의 사생활의 공표는, 비록 그것이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언론의 상업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독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행위나 표현의 자유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헌법학이론에서 독일의 이론적 영향하에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충돌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이다. 기본권의 충돌관계의 해결방법으로서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형량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상호간의 우열을 정하는 경우 생명·인격권, 자유권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간의 우열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제한의 원칙·대안 발견의 원칙이나,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 대안적 해결방법, 최후수단억제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충돌관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일련의 판례이론이 미국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바로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른, 공적인물의 이론 등이다.

우리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에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이유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현행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명예훼손(민병 제 751 조)과 같이 인격권변호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상 동일한 점이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성립요건으로 하며, 진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형법 제 310 조).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여부 등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생활의 침해만으로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리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하여, 5 만 프랑의 벌금형에 대하여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형량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40 만 프랑의 손해배상청구소승에서 법원은 단지 5 만프랑의 손해 배상을 명한 것은 유명연사란 점, 다른 나라의 저널에 이미 보도된 사진이라는 점, 사진의 내용이 별로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것 같다. 즉 이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은 법익 형량의 이론과 공적 인물의 이론도 상당부분 반영한 컷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산정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적시한 바대로라면 문제의 사진을 입수하기 위하여 파리-마치 지는 1 백만 프랑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작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8 년 제 9 호(1998, No, 156), pp.14~18.